



NO. 2017-US-01 (K)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 : + 82-70-8799-8332
Fax : + 82-70-8799-8339
E-mail : convention@krs.co.kr
Date : 31 Aug 2017

Person in charge: Kim, Jungsub

제목: 캘리포니아 주 선체부착생물(biofouling)에 관한 규정 안내

1. 개요

캘리포니아 주에 기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의 경우, 지정된 날짜 이후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에 따라 선체부착생물(biofouling)에 관한 규정 및 보고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2. 용어 정의

1) 선체부착생물(Biofouling)

해저, 프로펠러, 앵커 및 체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선박 및 물에 잠긴 선체 표면(wetted surface)의 해양생물부착을 의미한다.

2) 연장된 정박 기간(Extended residency period)

한 항구에서 45일 이상 연속적으로 정박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3) 수중소제(In-water cleaning)

선박의 해수면에 잠긴 부분의 선체부착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수중검사(In-water inspection)

잠수사 또는 원격 조정 장비를 이용해 선박의 해수면에 잠긴 부분에 시행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5) 수중처리(In-water treatment)

선박의 해수면에 잠긴 부분의 선체부착생물을 제거하지 않고, 살균 또는 비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6) 드라이도크에서 유지보수(Out-of-water maintenance)

선박의 해수면에 잠긴 부분의 선체부착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드라이도크 또는 슬립웨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Out-of-water maintenance”는 드라이도크를 의미한다.

7) 틈새구역(Niche area)

유체역학적 힘, 코팅 시스템의 마모 또는 손상, 방오시스템의 부적절한 보호로 인해 선체부착생물에 의한 생물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틈새구역은 “Sea chests, Sea chest gratings, Bow and stern thrusters, Bow and stern thruster gratings, Fin stabilizers and recesses, Out-of-water support strips, Propellers and propeller shafts, Rudders” 등을 주로 의미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3. 주요 내용

1) 적용

- 2017년 10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를 기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
- 2018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총톤수 300톤 이상 신조선
- 2018년 1월 1일 이후 계획된 첫 번째 드라이도크 시 선저부착생물관리 조치를 완료한 총톤수 300톤 이상 현존선

2) 내용

캘리포니아 주에 기항하는 선박의 선주/운항자는 아래 새롭게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주 선체부착생물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지정된 날짜 이후 동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a) 2017년 10월 1일 이후 해당연도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주를 기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동 항구 기항 시 적어도 24시간 전 “Marine Invasive Species Program Annual Vessel Reporting Form(New)”를 작성해 캘리포니아 주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Form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b) 2018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총톤수 300톤 이상 신조선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계획된 첫 번째 드라이도크 시 선저부착생물관리 조치를 완료한 총톤수 300톤 이상 현존선의 경우 다음의 추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선박에 대한 선저부착생물 관리 계획서(Biofouling Management Plan)를 개발하고 작성해야 한다. 동 계획서는 선박에 대한 선체부착생물의 관리 계획을 선장 및 선원들이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선저부착생물기록부(Biofouling Record Book)를 개발하고 작성해야 한다. 동 기록부에는 선저부착생물관리를 위해 취한 모든 조치 사항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가장 최근 선저부착생물관리를 위해 취한 조치(수중검사, 소제, 처리 및 드라이도크 시 유지보수 등) 후 한 항구에 45일 이상 연속적으로 정박해 있었던 선박이 캘리포니아 항에 기항하는 경우, 동 선박은 캘리포니아 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래와 같은 선저부착생물관리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사항을 선체부착생물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 수중검사(in-water inspection)
- 수중소제(in-water cleaning)
- 수중처리(in-water treatment)
- 드라이도크에서 유지보수(out-of-water maintenance)
- 틈새구역(niche areas) 소제 및 유지보수
- 물에 잠긴 선체 표면(wetted surface) 소제 및 유지보수
- 연장된 정박 기간(extended residency period)에 따른 선체부착생물 축적에 관한 모든 정보


3) 캘리포니아 주 기항 시 선체부착생물(biofouling) 요건에 따라 필요한 문서

- Marine Invasive Species Program Annual Vessel Reporting Form(New) 작성 및 캘리포니아 주 제출(동 기술정보 첨부 서식 사용)
- 선저부착생물관리 계획서 기록, 유지 및 본선 비치(별도 서식 없음)
- 선저부착생물기록부 기록, 유지 및 본선 비치(별도 서식 없음)

4. 첨부 자료

- 1) California port regulation on biofouling ----- 1 부
- 2) Marine Ivasive Species Program Annual Vessel Reporting Form(New)-- 1 부

- 끝 -

정 부 대 행 검 사 본 부 장 

배부처 : 선주 및 운항자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